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6
----------	------

제출연월일 : 2020년 2월 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03명 (7,416명 → 7,519명)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증원  
: 증 1명(5명 → 6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74명(6,893명 → 6,967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28명(518명 → 546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03명 (7,416명 → 7,519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75명 (6,895명 → 6,970명)
    - 5급 이하 소계: 증 75명 (6,813명 → 6,888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28명 (518명 → 546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증 28명 (468명 → 496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 2

다.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0. 1. 13. ~ 2020. 1. 22.) 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16” 을 “7,519”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 를 “6” 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6,893” 을 “6,967”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18” 을 “546”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b>총계</b>	<b>7,519</b>				
<b>정무직 계</b>	<b>1</b>				
교육감	1		1		
<b>일반직 계</b>	<b>6,970</b>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888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b>별정직 계</b>	<b>2</b>				
5급상당 이하 소계	2				
<b>특정직 계</b>	<b>546</b>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96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416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u>5명</u></p> <p>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6,893명</u></p> <p>3. 교육전문직원 정원 <u>518명</u></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519명</u>----- -----.</p> <p>1. ----- ----- ----- <u>6명</u></p> <p>2. ----- ----- -----</p> <p><u>6,967명</u></p> <p>3. ----- <u>546명</u></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416</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895</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416</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895</u>					2·3급	1		1			3급	9		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519</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970</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519</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970</u>					2·3급	1		1			3급	9		9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416</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895</u>																																																																																				
2·3급	1		1																																																																																		
3급	9		9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519</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970</u>																																																																																				
2·3급	1		1																																																																																		
3급	9		9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3·4급	3		3			3·4급	3		3		
4급	39		28	11		4급	39		28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b>6,813</b>					5급 이하 소계	<b>6,888</b>				
전문경력관 소계	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b>518</b>					특정직 계	<b>546</b>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b>468</b>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b>496</b>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103명 증원,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

2. 비용추계의 전제

일반직 75명 【‘5급 이하’ 75명】, 특정직 28명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인건비	8,972,734	9,388,091	9,822,675	10,277,376	10,753,126	49,214,002
	소계(b)	8,972,734	9,388,091	9,822,675	10,277,376	10,753,126	49,214,002
□ 총 비용(a-b)		8,972,734	9,388,091	9,822,675	10,277,376	10,753,126	49,214,00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8,972,734	9,388,091	9,822,675	10,277,376	10,753,126	49,214,002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8,972,734	9,388,091	9,822,675	10,277,376	10,753,126	49,214,002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김산원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정원 변동내역

- 일반직: 75명 증원
- 특정직: 28명 증원

### 2. 비용소요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1차년도 (2020년)	8,972,734	○ 인건비 추가 소요액: 8,972,734천원 - 일반직: 72,822천원 × 104.63% × 75명 = 5,714,475천원 - 특정직: 111,218천원 × 104.63% × 28명 = 3,258,259천원
2차년도 (2021년)	9,388,091	○ 인건비 추가 소요액: 8,972,734천원 × 104.63% = 9,388,091천원
3차년도 (2022년)	9,822,675	○ 인건비 추가 소요액: 9,388,091천원 × 104.63% = 9,822,675천원
4차년도 (2023년)	10,277,376	○ 인건비 추가 소요액: 9,822,675천원 × 104.63% = 10,277,376천원
5차년도 (2024년)	10,753,126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0,277,376천원 × 104.63% = 10,753,126천원
계	49,214,002	

#### ※ 비용추계 방법

- 1차년도

: 2019년도 인건비 단가×처우개선을 4.63%(호봉승급분 1.83%, 공무원 보수인상률 2.8%) 적용

- 2차년도~5차년도

: 2020년도 처우개선을 4.63% (호봉승급분 1.83%, 공무원 보수인상률 2.8%) 적용

☞ 처우개선을 4.63%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된 것임(실제 4.6291%)



## 【별첨 3】 관계법규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2.27., 일부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